

보존기간 : 10년

담 당	책임자	A M	부점장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

【BoleroAdvise를 이용한 신용장통지 거래】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 _____ (인)

주소 _____

본인(이하 “고객”이라 한다)은 이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BoleroAdvise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장통지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환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한다.

정의

고객이란 은행과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법인고객(“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미한다. BoleroAdvise시스템이란 SWIFT로 내도된 수출신용장의 전자적 통지를 위해 Bolero International Limited가 개발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Bolero International Limited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Bolero Web Interface를 포함한다.

제1조

고객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출신용장 통지 서비스(이하 “서비스” 한다)를 이용함에 동의한다. 은행의 서비스는, 고객이 은행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Bolero Signer Software License’와 ‘Bolero Certificate’에 대한 서면에 의한 사용동의를 완료된 후에 제공된다. 고객은 BoleroAdvise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통지/조건변경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고객은 BoleroAdvise시스템과의 접속을 위한 Interface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구입, 설치,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BoleroAdvise시스템과의 접속에 필요한 이 약정 체결일 현재 최소한의 설치요건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BoleroAdvise 환경설정 및 사용법” 자료에 표시되어 있다.

제3조

BoleroAdvise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boleroconnect.live.boleroserve.net> 이다. BoleroAdvise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 고객은 Login Code와 Password로 구성된 두 가지의 전자 키를 투입하여야 한다. Bolero International Limited는 고객이 이 약정서에 서명한 후 이메일을 통해 초기 Login Code와 Password를 고객 앞 전송한다. 고객은 BoleroAdvise시스템의 최초 접속시에 Password를 변경해야 하며, 수시로 Password를 변경할 수 있다. 고객은 Login Code와 Password를 비밀로 유지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고객은 은행이 Login Code와 Password에 대한 어떠한 부정한 사용이나 오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은행은 Login Code와 Password로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정당한 Login Code와 Password 투입하에 이루어 지는 작업이 고객이나 고객에게 수권 받은 제3의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추정한다. 고객은 이러한 추정을 부인할 수 없다.

제4조

본 거래 관련 수수료 납부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로 한다.

항 목	납 부 방 법	계 좌 번 호	거 래 인 감

제5조

은행은 BoleroAdvise시스템에 저장된 Data를 진정하고 완전하며 비밀로 유지되도록 보호한다.

제6조

통지가 이루어 진 증거는 은행내의 Computer기록(감사자료)에 의해 생성된다.

기록은 30일 동안 저장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은행은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고객은 일부의 신용장 통지가 기술상의 이유 또는 BoleroAdvise 시스템의 이용불능으로 인하여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은행이 BoleroAdvise 시스템을 상기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이 약정서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 경우 즉시 다른 방법으로 신용장/조건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은행은 서비스의 내용을, 특히 Data의 전달에 사용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나 서비스의 연장과 관련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은행은 수정된 내용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수정은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고객은 은행이 신용장/조건변경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은행은 고객이 원본의 별도 교부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고객 앞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객이 자신을 위해 발행되지 않은 신용장/조건변경을 수신한 경우, 고객은 그 내용을 다른 제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즉시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고객은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 BoleroAdvise 시스템과 관련된 어떠한 비정상적 상황이나 오용 상황이 발생된 경우 즉시 은행에 통보한다.
- BoleroAdvise 시스템 기능의 사용 및 정보 이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사항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
- BoleroAdvise 시스템은 오직 그것이 고안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본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를 위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BoleroAdvise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고객 이외의 제3의 당사자가 BoleroAdvise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할 지라도, 여하한 금지된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BoleroAdvise 시스템 이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은행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안전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 모든 관련 국제법과 현지법, 규약, 절차, 규정과 지시, 또는 BoleroAdvise시스템의 접속 및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규정 등을 준수한다.

제12조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은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은행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항이나 오류사항 등이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별도의 통보없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

어떠한 당사자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의무의 이행이 방해 받거나 지연된 경우에 대하여, 이 약정서상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조에서 불가항력은 화재, 홍수, 폭발, 파업, 전쟁, 천재지변, 또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 밖에 있고 국내 법원이 저항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결한 다른 비슷한 일이나 사건 또는 상황을 포함한다.

제15조

은행은 고객이 중대한 약정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Bolero Signer License'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객 앞 사전 서면통지 없이도 즉각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고객은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상의 지위를 양도하지 않는다. 고객은 제3의 당사자에게 Sub-licenses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Bolero International Limited는 BoleroAdvise시스템과 관련한 지적소유권의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이 약관의 조건 하에서 고객은 BoleroAdvise시스템을 사용할 권리만을 부여 받는다. 은행의 명백한 동의가 없이는

BoleroAdvise시스템의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다른 어떠한 사용도 금지되며, 그러한 사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침해행위이다.

제18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BoleroAdvise서비스의 제공 및 이 약정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관할권을 가지는 데 동의한다.

제19조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고객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해지효력 발생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은행이 이 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1개월전에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게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은 필요시 해당 고객 앞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

고객 또는 은행이 당사자인 BoleroAdvise와 관련된 계약 또는 약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의 불일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고객과 은행간에는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고객과 은행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의 다른 관련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